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6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11.

발 의 자 : 이원택·전재수·유동수
양정숙·장경태·전용기
한병도·신정훈·양이원영
윤재갑·정청래·박성준
윤미향·박용진·맹성규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, 성분, 가격 등을 기재·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

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).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호의 사항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·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.

